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장 애 인 고 용 축 진 및 직 업 재 활 법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‘월 단위’가 아닌 ‘일 단위’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,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고, 연체금 징수 예외 기준을 일 단위 표기 (시행령 제40조, 제41조 개정)
- 나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공단에 위임하는 근거조항 신설 (시행령 제82조제2항제31의2 신설)
- 다. 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화되지 않은 조문 정비 (시행령 제82조 제1항제2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1항 중 “채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
하고,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채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
해당하는 연체금”을 “채납기간 1일당 채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
하는 연체금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2항제1호 중 “연체금”을 “30일분에 해당하는 연체금”으로 한다.
제82조제1항제2호 중 괄호 안 “제2항제17호”를 “제2항제25호”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31의2에 “법 제3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”을 신설
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0조(연체금의 징수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<u>채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,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채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.</u>	제40조(연체금의 징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채납기간 1일당 채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1조(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)	제41조(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	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1. <u>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</u>	1. <u>30일분에 해당하는 연체금의 3천원 미만인 경우</u>
2.~4. (생략)	2.~4. (현행과 같음)
제8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제8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	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

장애에 위임한다.	장애에 위임한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,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(<u>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</u>)	2.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,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(<u>제2항제25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</u>)
3.~5. (생략)	3.~5.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.	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.
1.~31. (생략)	1.~3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1의2. 법 제36조의2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</u>
32.~40. (생략)	32.~40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485